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36호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장례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장례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장례 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장례식 집행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행정
자치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4, FAX 042-270-5029, E-mail : cmdjyou@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소방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3.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4. 법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활동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활동에 수반되는 직무 수행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항공구조구급대 인력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배치된 사회복지무요원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용소방대원

제4조(장례위원회)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

무원 등의 장례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례식의 구분

가. 대전광역시장(葬)

나. 소방서장(葬)

다. 가족장(葬)

2. 장례식의 구분에 따른 장례식의 주관자

3. 장례식의 방법·일시·장소에 관한 사항

4. 소요 재원 확보 방안 및 지원하는 장례 비용

5. 그 밖에 장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지원위원회에서 행한다.

제5조(장례 비용 지원) 시장은 장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결식 비용

2. 장례식 비용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집행위원회) ① 시장은 장례식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 기간 동안 장례식 주관 기관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삭제 <2015. 7. 24.>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삭제 <2017. 12. 26.>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은 시·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 병역법 시행령

- 제48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① 사회복지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복무요원 필요인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복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지별 필요인원, 복무분야, 복무형태 등을 기재한 사회복지복무요원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13. 12. 4.>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2.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 사업
4.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대상자의 선정
5.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